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말레이시아 쌀 수요 및 수입 증가

- 말레이시아에서는 피자, 빵, 파스타 등의 서양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말레이시아인들의 주식은 여전히 쌀임
- 말레이시아 쌀 국내 생산이 전체 소비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6%를 수입쌀에 의존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 주로 소비되고 있는 쌀의 종류는 쌀알이 긴 장립종이나 다양한 종류의 쌀이 수입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쌀의 80% 이상이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및 수입되고 있는 쌀의 품종은 다음과 같음
 - 단립종 : 일반적인 현지 생산 품종인 MR211, MR219, MR220, MR232 등은 길이 7.0mm이상의 중립종으로 반투명한 흰색임
 - 중립종 : 태국산과 베트남산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으며, 쌀알의 평균 길이는 6.4-7.0mm 정도임. 베트남 쌀이 태국산보다 약간 더 짧고 폭이 넓은 경향이 있음
 - 현미 : 씹는 맛이 있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더 높은 현미는 볶음밥이나 건강 요리에 적합하다고 소개되고 있으며, 벼의 외피가 남아 있는 현미는 물의 흡수가 더딘 만큼 조리시간이 일반 흰쌀보다 더 걸림

- 향미 : 자연적으로 풍부한 맛과 향의 향미(香米)를 주는 쌀로 주로 태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쌀알의 길이는 7.0mm 이상이며, 반투명의 광택 나는 흰색을 띄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현지에서는 가장 맛있는 쌀로 통함
- 바스마티 쌀 : 인도 및 파키스탄 일대에서 재배되는 길고 슬림하며 향기로운 쌀임. 길이는 6.0-8.0mm 정도로 김. 크림빛 흰색을 띄고 곡선으로 미세하게 구부러진 형태. 조리 시 특이한 향기가 나며, 중동지역의 전통요리인 비리야니에 매우 적합함
- 포니 쌀 : 포니 쌀의 낱알은 짧고 통통하며 매우 단단함. 인도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던 품종이며 커리 등의 인도식 요리와 잘 어울림. 조리 후 씹는 맛이 부드럽고도 탄력성이 있음
- 찹쌀 : 찰벼 'Oryza Sativa L. Glutinosa'로부터 생산되는 찹쌀은 sticky rice, waxy rice, sweet rice 등으로 분류되며, 쌀알은 중간 정도 길이이며 불투명한 흰색임. 조리 후 달콤한 뒷맛이 나고 부드럽고 풍부한 고소함을 지니고 있음
- 적미 : 항산화 성질이 풍부한 적미(赤米)는 탈곡 과정에서 껍질을 벗기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벗긴 특수 쌀로서 현미와 유사한 고영양의 특성을 지님. 일반적으로 단맛과 풍미를 띄며 흰쌀보다 씹는 맛이 좋음. 현미와 같이 조리 시간이 약간 더 걸림
- 자포니카 : 자포니카 종은 모양새가 둥글고 굵은 중단립형 품종으로 보통의 한국산 또는 일본쌀이 여기에 속함. 윤기가 나는 반투명의 빛깔을 띄고, 조리 시 중립종 및 장립종에 비해 찰기가 있고 촉촉하며 부드러움

* 출처 : 2019년 10월 16일, World Grain

2. 사라왁 재배 딸기 및 채소류 생산 증가 예상

- 보르네오 하이랜드 리조트(Borneo Highlands Resort)와 일본 네추럴 그린 라이프 팜(绿蕙生活园 • Natural Green Life Farm) 간의 MOU 체결에 따라,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딸기 및 각종 채소류를 생산하여 말레이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 유통 및 일본으로 수출할 전망
- 네추럴 그린라이프 팜이 보르네오 하이랜드 리조트에 현대식 유기농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보르네오 하이랜드 리조트는 선진 농업기술을 사라왁 현지 농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은퇴한 일본 농부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네추럴 그린라이프 팜의 농업기술 전수 교육은 2019년 7월 시작되어, 약 4 ~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보르네오 하이랜드 리조트는 딸기나무 약 4만 그루를 재배할 예정임
- 보르네오 하이랜드 리조트는 400~440 헥타르 규모 가용 대지가 있으며 기온은 섭씨 약 16~24도 수준으로 딸기(일본종자)와 토마토, 옥수수, 포도, 라벤더 등 딸기와 채소류를 재배하기에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평가됨

* 출처 : 2019년 10월 1일, 말레이메일

1. 돼지 열병으로 인한 말레이시아 돼지고기 반입 주의

-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
-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임시 수입금지 대상국가에 포함되었음
-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재외국민 또는 여행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음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 및 조사서비스법(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Act 2011)에 따라 10만 링깃(약 28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19년 10월 14일,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2. 주류 판매시 주의사항

- 주류 판매 시 면허(licence)가 필요
 - 말레이시아 관세법(Malaysia's 1976 Excise Act Law)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모든 벤더, 소매점, 가게, 식당은 어떠한 형태의 주류를 판매하든 면허(licence)를 취득해야 함
- 면허(licence)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 있음
 - 말레이시아 관세법(Malaysia's 1976 Excise Act Law)은 32조 (1)절에 예외 조항 명시

- 적절한 밀봉과 온전한 캡슐을 가진 미 개봉된 병 혹은 캔에 담긴 맥주 및 토디(Toddy)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
- 사바(Sabah)에서, 원주민에게 증류되지 않은 토산주를 소매 판매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한 토산주를 제공하는 경우
- 1967년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허가된 면세점에서 주류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
- 불법 주류 판매 예시
 - 카페나 다른 벤더들이 면허(licence) 없이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공공연하게 맥주가 판매 및 소비되고 있음
 - 그 외에도, 몰래 담근 술 밀주(illicit “moonshine” alcohol)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음(Samsu, Tuak, Toddy 등)
- 까다로운 주류 진열대 규정
 -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 361조 개정안에 의하면 주류 진열대는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주류 진열대는 다른 식품의 진열대와 구분되어야 함
 - 주류 진열대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함. 문구는 빨간 바탕, 굵은 글씨 48 포인트 이상, 기울어지지 않은 글씨체의 「MEMINUM ARAK BOLEH MEMBAHAYAKAN KESIHATAN」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 현지 대형유통매장 NON-HALAL 코너에 위치한 주류 매대



▲ 수입맥주 진열대

- 대형유통채널에서는 NON-HALAL 코너에서 주류를 판매함(술은 하람이기 때문에 할랄인 식품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여김)

III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 말레이시아 세관, 밀매 주류 및 담배 폐기

- 말레이시아 세관이 다양한 브랜드의 밀수 주류 및 담배 제품을 폐기했음. 주류 190만 리터와 담배 1,030만 개(시가 1,240만 링깃 상당, 약 35억원)가 해당
- 파디 압둘 할림 청장은 슬랑오르 주 포트 클랑에서 두 차례 밀수 제품들이 압류되었다고 밝혔음
- 밀수업자들은 수입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들의 창고를 빌려 임시로 밀수품을 보관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총 113컨테이너에서 밀수입 된 주류가 발견
- 두 번째 단속은 11월 8일 포트클랑에서 있었으며, 세관 직원들은 두 개 브랜드의 밀수 담배 제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발견하여 압수했음. 세관 신고서에는 스커트와 조끼 등 여성용 의류로 신고되어 있었음

- 두 사건 모두 ‘Customs Act 1967’과 ‘Excise Act 1976’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50만 링깃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19년 11월 8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2. 수입허가 없이 밀수된 바나나와 레몬 압류

- 말레이시아 검역청(MAQIS)은 KL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유효한 수입허가 및 식물 위생 증명서 없이 수입된 405kg의 바나나와 360kg의 레몬을 압류
- 검역청의 발표에 따르면, 압류된 바나나와 레몬은 각각 시가 RM3,082 및 RM2,740 정도의 가치로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된 과일의 위탁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음
- 검역청이 발행하는 수입허가 없이 과일 또는 식물을 수입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검역 및 조사서비스법(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Act 2011)의 11(1)조항에 의거한 범죄행위로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만링깃의 벌금형이나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19년 10월 16일, 베르나마 통신